

13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

- 건축물 및 정비사업(재개발·재건축)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(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) 고시

규제사무	의결내용
중점평가항목(온실가스) - 대규모 사업에 대해 일정비율(20%)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	원안의결 (보충의견 : 건축기획과, 공동주택과 등 유관 부서와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절차를 거쳐 탁상공론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줄 것)

-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

규제사무	의결내용
별표 안 제2호 (점용위치 관련)	조건부 원안의결 (점용허가 기준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, “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」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”는 내용의 허가 요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)
별표 안 제3호 (구조물 안전성 등 구조 관련)	
별표 안 제4호 (보험계약 체결 의무)	

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
이상과 같이 의결함

2018. 3. 8.

공동위원장	김 용 직	기인) 김 직
위 원	공 순 구	기인) 공 순 구
위 원	김 성 삼	기인) 김 성 삼
위 원	김 형 영	기인) 김 형 영
위 원	이 대 영	기인) 이 대 영
위 원	김 은 란	기인) 김 은 란
위 원	강 을 영	기인) 강 을 영
위 원	한 선 미	기인) 한 선 미
위 원	이 영 기	기인) 이 영 기